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543

발의연월일: 2024. 10. 4.

발 의 자: 김소희·김상훈·김선교

인요한 · 김예지 · 조경태

주호영 · 김대식 · 김정재

김성원 · 서범수 · 이인선

서일준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현재도 수도권매립지 관리 외에 폐기물의 자 원화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음.

이에 대해 기존의 기관명은 매립에서 자원화 및 에너지화로 변화하는 폐기물 처리의 패러다임에 부합하지 않고, 국민정서상 혐오시설로인식되는 매립지라는 명칭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지역주민의 갈등을 유발하는 등 공사의 업무 수행에 제약을 초래하여 공사의 기능과역할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 또한,신·재생에너지 및 탄소감축시설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그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.

한편, 공사가 축적한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활용한 국외 사업을 추

진할 경우 자원순환 분야의 해외 진출기회 확보를 기대할 수 있지만, 현행법은 공사의 해외사업 추진 근거 규정이 없음.

이에 공사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고, 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·재생에너지 및 탄소감축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공익 및 설립목적상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며, 국외 사업 시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조, 제5조, 제7조, 제11조, 제19조).

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"을 "수도 권자원순환공사법"으로 한다.

제1조 중 "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"를 "수도권자원순환공사"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"를 "수도 권자원순환공사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"를 "수도권자원순환공사"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"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"를 각각 "수도권자원순환공사"로 한다.

제11조 중 "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"를 "수도권자원순환공사"로 한다.

제19조제1항제10호 중 "문화시설"을 "문화시설,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감축시설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공익상 그 수행이 필요하거나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각 호의 사업을"을 "각 호 및 제2항의 사업을"로, "각 호의 사업과"를 "각 호 및 제2항의 사업과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각 호의"를 "각 호 및 제2항의"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2항"을 "제3항"으로 한다.

② 공사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자원순환 촉진과 관련한 사업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게 정 안
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	수도권자원순환공사법
운영 등에 관한 법률	
제1조(목적) 이 법은 <u>수도권매립</u>	제1조(목적) <u>수도권자원</u>
<u>지관리공사</u> 의 설립 및 운영 등	순환공사
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	
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	
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	
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	
화를 촉진하고, 수도권매립지	
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	
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	
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
제5조(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	제5조(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
획) ① 제7조에 따른 <u>수도권매</u>	획) ① <u>수도권자원순</u>
립지관리공사는 2년마다 다음	환공사
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	
매립지 환경관리계획(이하"관	
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	
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	
하며,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	
때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대통	
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	
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	
니하다.	

- 1. ~ 6. (생 략)
- ② 제7조에 따른 <u>수도권매립지</u> 관리공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·도지사와 협 의하여야 한다.
- 제7조(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법인격) ① 수도권매 립지를 환경상 안전하고 효율 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도 권매립지관리공사(이하 "공사" 라 한다)를 설립한다.
 - ② (생략)
- 제11조(유사 명칭 등의 사용 금지)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- 제19조(사업)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.
 - 1~9. (생략)
 - 10. 수도권매립지 안의 「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공 원시설, 「체육시설의 설치・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 1호에 따른 체육시설, 「문화

1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<u>수도권자원순</u>
환공사
·.
제7조(수도권자원순환공사
) <u>(1)</u>
수도권자원순환공
<u>사</u>
.
②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유사 명칭 등의 사용 금
ス])
수도권자원순환공사
제19조(사업) ①
·
1 ~ 9. (현행과 같음)
10

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3 호에 따른 <u>문화시설</u> 등의 설 치 및 운영

11. · 12.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② 공사는 제1항 <u>각 호의 사업</u>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<u>각 호의 사업과</u>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(出捐)할 수 있다.

③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
④ -----

을 받아 제1항 <u>각 호의</u> 사업을
------ <u>각 호 및 제2항의</u>

- 문화시설, 「신에너지 및
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
급 촉진법」 제2조제3호에
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
지 설비,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탄소감축시설
11. • 12. (현행과 같음)
13. 공익상 그 수행이 필요하
거나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
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사업
② 공사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
및 자원순환 촉진과 관련한 사
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
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
<u>다.</u>
<u>③</u> <u>각 호 및 제2</u>
<u>항의 사업을</u>
<u>각 호 및 제2항의</u>
사업과
<u>4</u>

위탁할 수 있다.	
<u>④</u> <u>제2항</u> 에 따른 출자나 출연	<u>⑤</u> 제3항
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	
로 정한다.	<u>.</u>